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웅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보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04. 2. 7. 접수 제44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04. 2. 7. 접수 제44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04. 2. 7. 접수 제4484호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04. 2. 7. 접수 제4483호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004. 2.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그 외 군산시 D 토지 등의 매매대금으로 38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존재하는 점, ④ 원고 본인이 2004. 2. 4.

직접 용도를 '부동산매도용'으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부존재 또는 무효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라북도 군산시 전 298㎡

- 위 부동산 중 지분 290분의 265 -

2. 전라북도 군산시 임야 21322㎡

- 위 부동산 중 지분 21분의 1 -

